

2. 주요 업종별 통상 이슈 분석(2)-철강

□ 주요 통상 현안

98년 이후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슈퍼 301 조 부활,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요구 등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

- (AD/CVD 확산) 98년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EU, 개도국의 반덤핑(AD, Antidumping) 및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부과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
 - 미국의 對韓 AD/CVD 조치 총 19건 가운데 12건이 철강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조사 품목 포함. 99년 1월 기준), 98년에 들어서만 3건이 추가 제소되었음
 - 미 행정부가 의회 보고(Action Plan)¹⁾를 통해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철강업계와 의회는 가시적인 수입 규제 조치를 요구²⁾
 - 미 의회는 덤핑 행위에 대해 자국 업체가 연방법원에 제소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98년 9월 일본, 브라질 등의 열연 강판을 덤핑 혐의로 제소해 예비덤핑판정(마진율 25~71%)을 받아놓은 가운데, 2월 16일에는 한국 등 8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후판에 대해 AD/CVD 제소³⁾
 - 유럽도 IMF 지원금의 산업 지원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제재를 지속. 특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시장 보호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음. 한편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석도강판에 덤핑예비판정(마진율 NKK 68.8%, 포철 9.8%)을 내리고 인도는 수입 관세를 10% 인상하는 등 개도국의 수입 규제도 강화
- (슈퍼 301조 부활) 미 행정부는 지난 1월 양자간 협상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부활
 -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철강재 수입이나 바나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일본, EU 등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자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취함

1) 주요 내용: ▷주요국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기 위한 양자 협상 추진 ▷기존 통상법 엄정 운영 ▷통상법201조 근거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검토 ▷수입을 감시하는 경고시스템 운용 ▷수출국의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재정원조, 개혁 추진 ▷미 철강사에 3억달러 세금 환급 ▷철강 노동자 구제위 설치

2)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철강수입규제를 촉구하는 'Stand Up for Steel' 캠페인 전개. 미 경제전략연구소(ESI)는 업계 이해를 대변해, 외국의 철강재 덤핑 판매나 보조금 지급은 미국 경제 전체에 순수손실을 초래할뿐 아니라 세계 철강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강력한 AD/CVD 조치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

3) 우리나라는 과거 최대 후판 수입국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수출국으로 전환(98년 9월까지 對美 후판 수출량이 전년보다 16배나 증가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일본은 6배 증가)

- 우리나라가 3월 발표 예정인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철강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업계의 덤핑 수출 등 주요 통상 현안의 해결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긴급수입규제) 미 의회 등을 중심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는 통상법 201조의 발동 요건 완화를 요구
 - 미 행정부의 Action Plan도 통상법 201조를 근거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
 - 의회에서는 통상법 201조의 산업피해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입감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rade Fairness Act',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을 3개월간 금지하고 수출자율규제협정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Fair Steel Trade Act', 국별 수입량을 97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쿼터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
 - 98년 12월 수입량이 급감하자 행정부가 수입제한 조치 실행 여부를 2월 하순까지 보류하였고 의회에 제출된 법안들도 WTO 규정에 어긋나는 수량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행정부로 하여금 통상법 201조를 발동, 고율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압박

<통상법 201조 현행안 및 개정안 비교>

	현행 section201	개정안(S 2580)
제소 조건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의 상당한 원인(substantial cause)이 될 때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의 사실상 원인(cause in fact)이 될 때
ITC 피해 판정요건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 조사	심각한 피해사실만으로 인정(인과관계 입증 불필요)
ITC 판정시 고려요인	-국내산업 생산설비의 유휴시설 -정상기업의 영업정지 여부 -국내산업의 주요 실업률	-수입제품의 증가 비율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 변화 -판매, 생산, 가동률, 이익 변화

자료: 한국철강신문

□ 수입 규제 강화의 배경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철강재의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철강재 가격이 하락하고 선진국 시장으로의 유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불만이 고조

- (철강 무역 구조 변화) 최대의 철강 수입 시장이었던 아시아 지역이 경제위기 이후 순수출 지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계 철강 시황이 급속히 악화
- 경제위기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의 철강 수입량이 연간 8,000~9,000만 톤(반제품 포함) 수준으로 세계 철강 교역량의 1/3을 차지하였으나, 위기 발발후 우리나라나 태국의 철강 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 수출은 60% 이상 증가하고 최대

의 수입국이었던 중국도 순수입량이 감소

- 이로 인해 철강재 가격 경쟁이 격심해지면서 주요 제품의 가격이 97년 최고치에 비해 대비 40~60%나 하락⁴⁾하는 등 세계 철강 시황이 매우 악화
- 한편 올해에도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철강재 흡수 능력이 쇠퇴하고 아시아 시장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한편 수요가의 재고가 누적된 상태라서 철강재 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우려) 구소련, 아시아, 중남미 등지로부터의 철강재 유입량이 급증하자 선진국 철강업계의 위기감 고조

- 미국의 98년 11월 철강재 수입량은 전년대비 72%나 증가했으며 1~11월까지 누적으로는 전년동기보다 33% 증가한 3,865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그에 따라 철강재의 명목소비대비 수입재 비중도 97년의 24%에서 30%로 상승⁵⁾하고 가동률은 98년 3월 90%에서 연말에는 75% 수준으로 하락
- EU의 경우에도 98년에 사상 처음 철강 순수입국으로 전환(98년 12월도 수입량이 170만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일본	러시아	한국	브라질	전세계
98년 10월	882	603	293	189	4,110
98년 11월	828	738	327	297	4,031
전년대비(%)	260	262	221	114	72
98년 1-11월	6,291	5,106	3,191	2,477	38,659
전년대비(%)	167	60	112	-7	33

자료: 미 상무부

- 이와 같은 수입재 범람에 대해 미국 철강 업계에는, 외국 정부의 왜곡된 무역 정책으로 자국 업체가 피해⁶⁾를 보고 있는 만큼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로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고 세계 철강 시장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

□ 대응책

수출 급증은 내수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이해시키는 한편 WTO 등 다자간

4) 세계 철강재 가격 기준치인 열연강판 유럽수출가격(FOB)은 97년 최고가 350달러에서 98년말 185달러로 하락

5)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피해 판정 기준으로 볼 때, 철강재 등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고 점유율 증가폭이 큰 품목일수록 덤핑 피해 판정 가능성이 높아짐

6) 후판을 주력 생산해오던 Geneva Steel이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 2월 1일 파산 신청

- 협상을 활용해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에 공세적으로 대응. 한편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 되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일몰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적극적 해명)** 수입 규제 압력 자체가 실질적인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지난해의 수출 급증이 일시적인 것임을 이해시켜 업계의 반발을 무마
 - 업계와 정치권의 거센 수입 규제 요구와 규제 조치의 실행 가능성만으로도 철강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AD/CVD 제소 범위를 확대하고 고율의 덤핑 마진을 부과하거나 수량 제한 등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철강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지난해의 수출 급증이 내수 붕괴와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99년에는 내수 증가와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 회복, 업계 감산 등으로 수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이해시켜야 할 것임
 - **(WTO 차원의 대응)**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을 활용해 보호주의 압력에 공세적으로 대처
 - 일본 등은 슈퍼 301조에 따른 일방적 제재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하고 분쟁해결절차도 훼손시키는 것임을 들어 강력하게 비난하며 WTO에 제소한 상태임
 - 따라서 WTO 등 다자간 협상을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에 공세적으로 대응
 - **(Sunset Review 활용)** 한편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 되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일몰재심⁸⁾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99년중 총 14개 품목에 대해 재심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철강금속 제품이 9개로 대부분을 차지(와이어로프는 이미 무혐의 판정)
 - 규제가 철회될 경우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업체나 협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99년 한국産 주요 철강재 Sunset review 일정>

- 7) 99년 1월 포철의 수출은 98년 월평균 실적보다 20%가량 감소한 51만 톤에 불과. 지난해 9월 제소된 열연강판의 경우 일본의 對美 수출은 전월의 1/4, 러시아는 1/10, 우리나라는 1/2로 감소
- 8) WTO의 반덤핑 규제 일몰규정(Sunset Clause)에 따라 제재 대상 품목의 덤핑 규제가 개시된지 5년 이내에 재심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 상무부는 덤핑 재발 가능성, ITC는 미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통상 1년 소요). UR협정에 따라 98년 7월부터 시행

기획 연재

시 기	품 목	비 고
99. 1	와이어로프	92.4 AD제소→93.2 AD판정→98.4 무혐의 판정
99. 5	스탠다드강관	91.9 AD제소→92.9 AD판정→98.1 1차 연례재심 최종수정판정
99. 7	STS용접강관	91.11 AD제소→92.11 AD판정→97.12 1차 연례재심 개시
99. 7	STS강관이음쇠	92.5 AD제소→92.12 AD판정
99. 9	냉연강관·아연도강관	92.6 AD/CVD제소→93.6 AD/CVD판정→98.4 3차 연례재심 최종수정판정

자료: 미 상무부

(박 병 칠 bcpark@hri.co.kr ☎724-4048)